

韓國包裝開發研究院 包裝技術 開發事業 指定 根據

産業디자인 · 包裝技術開發事業 運營 要領
産業資源部 告示 第1998-34號 (98.5.6)

産業자원부는 사단법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공업발전법에 의한 포장기술개발사업 기획관리 평가 전담기관(약칭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1998.5.6일자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34호로 개정 고시하였다. 동고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 · 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1998.5.6일자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34호로 개정 고시하였다. 동고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구분

① 개발사업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 산업디자인정보화 지원사업
3.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 사업
4. 포장기술개발지원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한 사업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개발심의회

①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지도본부장
2.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 전문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4조 평가위원회

①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의 선정 ·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기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 전문가로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내에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 포장기술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 5조 전담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발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3. 개발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
4. 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촉진
5.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개발사업 개시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과 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조 개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연도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 7조 개발사업의 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8.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개발사업의 지원신

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서 및 개발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
3.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가능성
4. 개발사업비 및 개발사업 기간의 타당성
5. 기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개발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개발사업 지원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의 선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은 전담기관 의장 : 이하 같다) 과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발사업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지원대상자가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

자 하는 경우

3. 산업디자인정책 또는 포장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개발사업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개발사업평가보고서 제출요령

- ①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사업연도별로 개발사업결과보고서의 목록, 개발사업결과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 14조 운영요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자가 개발사업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업발전법령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조 운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6조 운영요령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예산 또는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기획,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외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4조 기 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요령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